

연락처:

IHRC (영어, 힌디어), Smita Narula 소장
917-209-6902; smita.narula@nyu.edu
인도, 한국 연락처 : escr-net@escr-net.org

ESCR-Net, Chris Grove 소장
718-916-7461; cgrove@escr-net.org

인도와 포스코는 철강사업 관련 인권침해를 중단하라

인권 단체들은 사업을 보류하고 강제퇴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THE PRICE OF STEEL

Human Rights and Forced Evictions
in the POSCO-India Project



(뉴욕, 2013년 6월 27일) – 오늘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발표자료를 통해 인도 정부와 대한민국 거대 철강업체인 포스코가 인도 동부지역 오디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포스코-인디아 사업에 따른 인권침해를 멈추고 토지 불법점유와 이에 따른 2만 2천명의 강제퇴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강사업의 대가: 포스코-인디아 프로젝트의 인권과 강제퇴거 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포스코-인디아 프로젝트의 양해각서 체결 8주년에 맞춰 피해를 입은 지역공동체가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 모이고, 포스코의 몇몇 국제투자자들이 OECD의 책임경영에 관한 글로벌 포럼의 참석을 위해 파리에 모이는 것에 맞춰 발표되었다.

뉴욕대 법학대학의 국제인권클리닉(IHRC)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네트워크(ESCR-Net)가 함께 1년간 조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철강사업의 대가*는 포스코-인디아 프로젝트의 보류와 그 피해의 규모가 커지기 전에 학대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온 마을이 폐죽음을 당하고 생계가 파괴될 것이며 가족들은 떠돌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주거보장에 관한 전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이자 현재 거주권과 토지권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밀론

코타리(Miloon Kothari)씨가 전했다. “강제퇴거는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들이 입는 충격은 가히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0억 달러에 달하는 포스코-인도 프로젝트는 인도에 투입된 단일해외직접투자규모로는 현재까지 최대 규모이며, 만 2천 에이커가 넘는 땅이 필요한 사업이다. 여기에는 종합제철소와 전용항구를 위한 4천 에이커의 토지가 필요한데 이곳은 오랫동안 삼림지대에서 구장(betel)잎을 키우며 풍부하고 지속적인 생계수단을 보유해왔던 마을이 있는 곳이다. 지난 8년간 농부, 어부, 불가촉천민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전체가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항의를 통해 그들이 대대로 지켜오던 땅에서의 강제 퇴거에 반대하고 이 사업을 지연시켜왔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역공동체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은 인도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국제법은 인도 정부가 강제퇴거 대신 지역공동체와 진정성 있는 논의, 피해재산에 대한 충분한 보상,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진행 등과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조직적으로 이 규범 중 어떤 것도 따르지 않고 있다.

또한 삼림권보호법에 따라 인도 정부는 삼림지대의 용도 변경 시 거주자들의 동의를 얻게 되어있다. 지역공동체는 수 차례 포스코-인디아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결의문을 제출했으나 인도정부는 이를 사실상 무시해왔다.

“포스코-인디아 사업을 위한 강제퇴거는 명백하게 인도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입니다.” IHRC 소장이자 이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스미타 나룰라(Smita Narula)교수는 말한다. “인도 정부는 기업의 요구보다 국민들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도정부는 포스코-인디아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대해 집중적으로 폭력, 자의적인 체포 및 구금으로 공격하였다. 지역 경찰들은 마을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학교를 점령하였으며 수천개의 집을 무너뜨렸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는 부당한 형사 고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스코 및 인도 정부와 이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민조직 및 용역에 의한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년간 이러한 학대의 결과로 사업지역의 지역공동체 전체가 개인의 안전보장, 이동의 자유를 빼앗긴 채 갇혀지내야만 했으며,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자의적인 체포 및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모두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 이동에의 자유가 없는 것은 보건서비스, 학교, 시장, 농작물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보건, 교육, 노동, 음식에 대한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수천명의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토지, 생계수단 그리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SCR-Net의 크리스 그로브(Chris Grove)소장은 밝혔다. “그들의 요구는 바람직한 경제개발이라면 충분히 요구할만한 합리적인 것입니다. 해외투자를 받기 위해 인권을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포스코가 지역사회의 강제퇴거나 포스코-인도 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에 따르는 인권침해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는 대외적인 증거는 없다.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4월 포스코는 ESCR-Net에 보낸 서한에서 “인도 정부는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퇴거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ESCR-Net 과 IHRC 는 모든 관련 행위자들이 포스코-인디아 사업이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즉시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

- **인도 정부**는 인권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포스코-인디아 사업을 보류하고, 강제퇴거와 토지수용을 위한 모든 시도를 즉시 중단시킬 것;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및 폭력의 남용을 중단하고 주민조직 및 용역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으로부터 지역공동체를 충분히 보호할 것; 지역공동체가 노동, 충분한 음식과 보건 및 교육 서비스에 방해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기업의 해외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포스코의 모든 활동이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 **포스코와 자회사인 포스코-인디아**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것; 관련 현지 법을 모두 따를 것; 현재까지 발생한 인권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는데 지원하거나 협조할 것
- **포스코 국제 투자자(ABP, 블랙록, 도이치 방크, JP 모건 채이스 포함)**는 투자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포스코가 포스코-인디아 사업으로 피해를 받은 지역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할 것

[전체 영문보고서\(PDF\)](#)

[한글 보고서 요약\(PDF\)](#)

보고서 작성자

뉴욕대학의 법과대학 소재의 **국제인권클리닉(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은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인권관련 법률자문을 지역사회 조직, 인권단체, 국제기구의 인권전문가와 관련 조직에 제공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250개가 넘는 NGO와 사회운동조직이 가입한 국제 네트워크로, 70개국에서 인권을 통한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역량강화, 연대활동, 공동행동 등을 수행합니다.

이 언론발표와 첨부하는 보고서는 ESCR-Net과 IHRC의 소유로 뉴욕대학교의 입장과는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